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11

발의연월일: 2023. 1. 11.

발 의 자:서삼석·강득구·김정호

소병훈 • 안호영 • 양정숙

윤준병 • 이병훈 • 이장섭

정성호 · 한준호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마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말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있음.

그런데 최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마권을 구매한 사람의 투표에 혼선을 주어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특히 말이 뒤바뀐 사실을 마사회가 아닌 시민의 제보로 확인함에 따라 마사회의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주마의 사전적인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 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운영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명
-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 3. 마주의 성명
-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경주마의 등록 방법·절차, 등록 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 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 (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 록된 경주마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 체식별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주마의 등록) (생 략)	제12조(경주마의 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
	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마명</u>
	2. 말의 품종·성별·털색·특
	<u>징·생년월일·혈통</u>
	<u>3. 마주의 성명</u>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u><신 설></u>	③ 경주마의 등록 방법・절차,
	등록 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u>정한다.</u>
<u><신 설></u>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 마사회는 경
	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
	서 "등록정보"라 한다)이 마권
	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 체식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 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 기술적 조 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